#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27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1.

발 의 자:김상훈·김선교·윤한홍

고동진 · 김소희 · 권영진

주호영 · 이달희 · 이헌승

임종득 • 권성동 • 권영세

송언석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(이하 "공사"라 함)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.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.

한편 금융위원회가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'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'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,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 중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, 제111조 등을 추가 규정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9항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423호)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9항 후단 중 "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"를 "제110조,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, 제111조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)	제32조(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)
① ~ ⑧ (생 략)	①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	9
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	
업무에 관하여는 「자본시장과	
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	
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	
로 본다. 이 경우 「신탁법」	,
제4조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	
업에 관한 법률」 제30조부터	
제33조까지, 제38조제6항, 제10	
5조,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	<u>제110</u> 조, 제110조의2부터
<u>기</u> , 제415조, 제416조, 제420조	제110조의7까지, 제111조
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	
다.	